

【 16 】 양주군보건진료소수가조례폐지조례안

제출연월일 : 1999. 4. 24.

제 출 자 : 양 주 군 수

□ 제안이유

- 의료보험법 제29조 제3항 및 동법 제31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보건진료소 수가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 시행함에 따라 동 조례를 폐지코자 함.

□ 주요골자

“동 조례 폐지”

양주군조례 제 호

양주군보건진료소수가조례폐지조례안

양주군보건진료소수가조례는 이를 폐지한다.

부

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第38編 社會福祉 第6章 社會保險 醫療保險法

法중 社團法人에 관한 規定을 準用한다.

第4章 保險給與

第29條 (療養給與) ①被保險者 및 被扶養者의 疾病 또는 負傷에 대하여는 다음 各號의 療養給與를 실시한다.

1. 診 察
2. 藥劑 또는 治療材料의 지급
3. 處置·手術 기타의 治療
4. 醫療施設에의 收容
5. 看 護
6. 移 送

②第1項第1號 내지 第4號의 規定에 의한 療養給與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各號의 保健機關·醫療機關 또는 藥局(이하 "療養機關"이라 한다)에서 행한다.

1. 保險者 또는 保險者團體가 지정한 保健機關·醫療機關 또는 藥局
2. 保險者團體가 設置·운영하는 醫療機關

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療養給與의 方法·節次·범위·上限基準등 療養給與의 기준은 保健福祉部長官이 정한다. <改正 95·8·4>

第30條 (保險者負擔 療養給與期間) ①保險者가 費用을 부담하는 療養給與의 기간은 年間 300日이상으로 하며 그 療養給與期間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. 다만,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에 대하여는 療養給與의 기간을 제한하지 아니한다. <改正 95·8·4, 97·1·13, 97·12·31>

1. 65歲이상의 者
2. 障礙人福祉法에 의하여 登錄한 障礙人
3. 國家有功者등禮遇및지원에 관한法律 第4條第1項第4號, 第6號, 第10號, 第12號 또는 第14號에 規定된 國家有功者
4. 肺結核으로 療養給與를 받은 者
5. 기타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重한 疾病으로 療養給與를 받은 者

②第1項 本文의 規定에 불구하고, 保險者가 부담하는 療養給與의 費用이 保健福祉部長官이 정하는 金額미만일 경우에는 保險者는 그 金額에 달할 때까지 給與期間을 연장할 수 있다. <改正 95·8·4>

第31條 (分娩給與) ①被保險者 또는 被扶養者가 療養機關에서 分娩하는 때에는 分

(추 98)

娩給與를 실시한다.

②第29條第3項의 規定은 第1項의 경우에 이를 適用한다.

第32條 (療養機關의 지정) ①第29條第2項第1號의 療養機關은 保健福祉部長官이 정하는 바에 따라 保險者 또는 保險者團體가 이를 지정한다. <改正 95·8·4>

②保險者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療養機關指定 權限을 保險者團體에 위임할 수 있다.

③保險者 또는 保險者團體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療養機關을 지정함에 있어 필요한 때에는 保健福祉部長官이 정하는 바에 따라 第1次診療機關·第2次診療機關·第3次診療機關 또는 特殊診療機關으로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. <改正 95·8·4>

④保健福祉部長官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保險者 또는 保險者團體에 대하여 療養機關을 지정하게 할 수 있다. <改正 95·8·4>

⑤第1項 또는 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醫療機關 및 藥局은 正當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.

第33條 (療養機關指定의 取消) ①保險者 또는 保險者團體는 保健福祉部長官이 정하는 바에 따라 療養機關의 지정을 取消할 수 있다. <改正 95·8·4>

<1998·5·28 憲法裁判所 違憲決定으로 本項 效力喪失>

②保健福祉部長官은 療養機關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療養機關의 지정을 取消할 것을 保險者 또는 保險者團體에 명할 수 있다. <改正 95·8·4>

1. 第35條의 規定에 의한 療養給與나 分娩給與의 費用의 請求에 있어서 부정인 있을 때

2. 第76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命令에 위반하거나 허위보고를 하거나 關係公務員의 檢査 또는 質問을 거부·방해 또는 기피한 때

第34條 (費用의 일부부담) ①第2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療養給與나 第3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分娩給與를 받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費用의 일부를 本人이 부담한다.

②第2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療養給與나 第3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分娩給與에서 保險者가 부담하는 費用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本人一部負擔金을 公제한 금액으로 한다.

第35條 (療養의 費用등) ①療養給與 또는 分娩給與에 관한 費用은 保健福祉部長官이 審議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정한 기준에 의하여 算定한 금액으로 한다. <改正 95·3·4>

②保險者는 療養機關으로부터 療養給與 또는 分娩給與에 관한 費用의 請求가 있